



## 일본 치매환자를 위한 자산관리 지원 동향

김유미 연구원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5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치매환자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어 자산관리 지원 및 보호방안이 필요함. 미즈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의 치매환자의 자산관리를 대부분 가족·친족이 하고 있으며, 소액의 간단한 금융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후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청절차의 복잡성 및 보고의무 부담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수요는 낮은 상태임. 하지만 치매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신상보호 확보 측면에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치매환자 수는 2015년 5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및 보호방안 문제가 중요해짐
  - 일본은 치매에 걸린 노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sup>1)</sup>
  - 고령의 치매환자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금융 사기나 피해에 노출되기 쉬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치매환자의 자산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해짐
- 미즈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의 치매환자를 위해 가족·친족이 금융거래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은행 예·적금 및 해약 처리, 보험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sup>2)</sup>
  - 고령의 치매환자가 ATM 사용 등의 은행업무처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족·친족이 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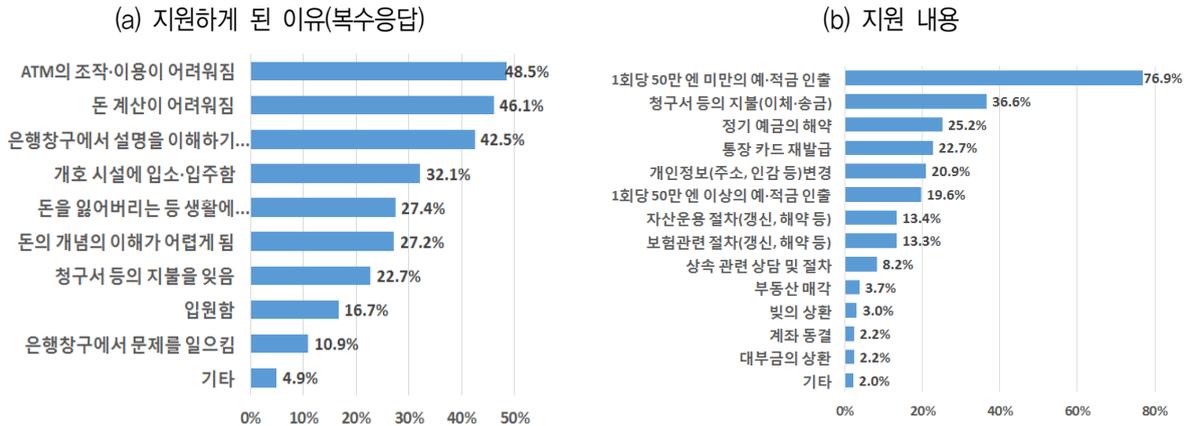
1) 후생노동성(2016. 6), 「認知症の本人及び家族への地域資源を活用した支援に関する調査」

2) みずほ情報総研(2017. 5. 19), 「認知症の人に対する家族等による預貯金・財産の管理支援に関する調査」, 조사보고서

무 처리를 도와주기 시작함

- 치매환자를 대신하는 업무로는 50만 엔 미만의 예·적금 인출이 7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청구서 등의 지불, 정기예금 해약 등의 간단한 금융업무 처리가 주를 이룸

〈그림 1〉 고령 치매환자 금융거래 지원 현황



자료: みずほ情報総研(2017. 5. 19), 「認知症の人に対する家族等による預貯金・財産の管理支援に関する調査」

■ 일본은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가족에게만 부담하지 않고 후견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1999년에 성년후견제도를 2012년에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함

- 성년후견제도<sup>3)</sup>를 이용할 경우 피후견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일상생활에 관한 지원도 가능해짐
- 제도초기에는 가족·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후견인에 의한 재산 횡령 및 배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sup>4)</sup>
- 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 전문금융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가정재판소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함
  - 가족·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은 2000년 91.0%에서 2016년 28.1%로 감소하였으며, 법무사, 변호사 선임 비율은 50.3%로 제3자의 전문후견인을 지정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sup>5)</sup>

3)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후견인 선임방법과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됨(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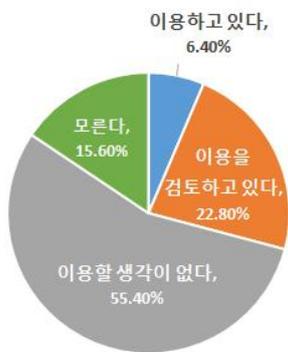
4)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친족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후견인제도가 도입·개시된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약 8배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판명된 친족후견인에 의한 재산횡령·유용 등 부정행위 총액이 18억 3천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정봉은·이선주 2015)

- 후견인은 신탁은행과 거래하는 일체의 중대한 내용을 가정재판소에 사전 신청하여 선임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신탁의 설정 및 계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후견인에게 보고 및 지시·명령내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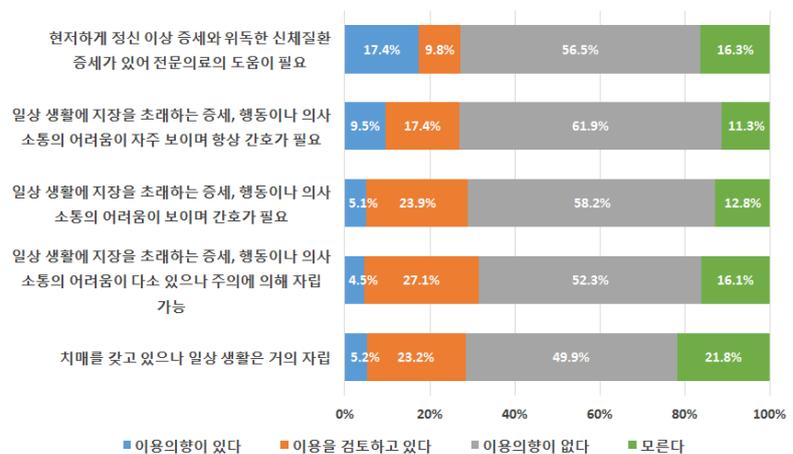
■ 한편, 복잡한 신청절차 및 후견인의 보고의무 부담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의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후견인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sup>6)</sup>

- 미즈호종합연구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4%만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5.4%는 성년후견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용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치매환자의 자립도가 낮을수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가 높았으나 여전히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향은 낮게 나타났으며, 제도의 복잡한 신청절차 및 보고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그림 3〉 참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후견인의 지원내용은 50만 엔 이상의 예·적금의 인출, 부동산 매각, 상속 관련 절차 등 거래 액수가 크고 복잡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그림 2〉 성년후견제도 이용 의향



〈그림 3〉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자립도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의향(n=2000)



자료: 미즈호정보총합(2017. 5. 19), 「認知症の人に対する家族等による預貯金・財産の管理支援に関する調査」

- 성년후견제도는 치매환자 본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 및 구제요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KiRI](#)

5) 일본최고재판소(2017. 3),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

6) 미즈호정보총합(2017. 5. 19), 「認知症の人に対する家族等による預貯金・財産の管理支援に関する調査」